

# 법과대학 학생상벌위원회 내규

## 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본 내규는 법과대학 학생상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본 내규는 법과대학에 적용된다.

## 제 2 장 학생상벌위원회

제 3 조 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,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법과대학장(이하 "학장"이라 한다)이 된다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과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간사는 법과대학 교무과(계)장이 된다.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.

제 4 조 (임기)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5 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법과대학 학생의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
2. 학생의 상벌에 관련된 기타 사항

제 6 조 (회의)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개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표창 또는 징계의 의결을 요구한 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 7 조 (의결의 기한) 위원회는 표창 또는 징계의 심의를 요구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 8 조 (회의의 비공개 등)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②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제 3 장 표 창

제 9 조 (표창의 종류 및 대상)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표창을 받을 수 있다.

1. 학업상 :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
2. 학술상 : 학회활동과 논문발표 등을 통해 면학 및 연구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자
3. 공로상 :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능력이 탁월하며 법과대학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
4. 문화상 : 문화부문에 우수하고 창의적 업적을 나타내어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

5. 체육상 : 체육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거나 체육을 통하여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
6. 모범상 : 교내외에서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여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
7. 기타 지도교수의 표창 추천을 받아 총장 또는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
제 10 조 (표창 추천) 해당 대학장은 제8조의 요건을 갖춘 학생을 표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.

1. 공적조서 1부
2. 지도교수 추천서 1부

제 11 조 (표창의 방법) ①학업상은 학장상, 우등상으로 구분한다. 학장상은 법과대학 졸업생 중 4개년 학업성적평균 최고득점자에게 졸업시에 수여한다.

②학업상을 제외한 표창은 前학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매년 4월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할 수 있다.

제 12 조 (결격자) 재학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징계의결이 요구중에 있는 자는 표창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
## 제 4 장 징 계

제 13 조 (징계제청) 학생생활규정 제19조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학장은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의 서류는 징계혐의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.

1. 사건경위서
2. 징계혐의자의 진술서
3. 전공지도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의견서
4.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자료
5.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

제 14 조 (징계의 심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개최 7일 전에 징계 심의 대상이 된 학생에게 징계 심의에 회부된 사실 및 출석기일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②징계의 심의대상이 된 학생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. 단,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③징계의 심의대상이 된 학생이 2회 이상 출석 또는 서면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 할 수 있다.

제 15 조 (징계의 양정)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, 학업성적, 개전의 정, 징계요구의 내용,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.

제 16 조 (징계의 효력) ①근신은 1주일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수업 이외의 학생자치활동에의 참여를 금한다.

②유기정학은 1주일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, 무기정학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.

③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고 수업을 받을 수 없다.

④제적은 본교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다.

제 17 조 (징계사유의 시효)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.

제 18 조 (재심청구)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양정, 절차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제 19 조 (징계처분의 발효) 징계처분의 발효일자는 학장의 결재일로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.

제 20 조 (통보) 교무과(계)과장은 학장의 결재를 받은 즉시 관계 부서 및 학부모, 본인에게 징계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21 조 (징계해제) ①근신과 유기정학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절차없이 해제되며 무기정학은 개전의 정이 명확한 경우에 징계요청자의 해제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해제한다.

②학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학생의 개전의 정, 품행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참고사항<학생생활규정 중에서> 제 5 장 표창 및 징계

제 18 조 (표창)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할 수 있다.

1.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경우
2. 본교의 명예를 대내외에 드높인 경우
3. 본교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
4. 기타 타의 귀감이 될만한 선행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

제 19 조 (징계) 학생징계는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, 제적으로 구분하며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징계 처분할 수 있다.

1. 학칙 등 본교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폭력행위, 불법적인 집단 행위, 시험 중 부정행위, 학교시설물 파괴, 절취 등 학생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경우
2.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

제 20 조 (표창 및 징계의 절차 등) 표창 및 징계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